제6장
기타 사례

제6장 기타 – 후속보도 사례

사례23

강남에 소재한 한 여행사의 부도 소식을 보도하면서 "강남 여행사"로 칭하여 동일 상호의 여행사에 피해를 입혔다.

사 건	2016서울조정189·190 정정·손배청구
신 청 인	○○여행사
피 신 청 인	주식회사 와이티엔 (YTN)
중 재 부	서울 제3중재부
접 수 일	2016. 2. 15.
처 리 결 과	조정성립 (PR·후속보도)

사건개요

- 피신청인은 강남에 소재한 한 여행사가 부도를 내 신혼부부 수십 쌍이 여행경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.
-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강남지역의 한 여행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도난 여행사와 혼동하도록 하였고, 고객들로부터 계약 취소 및 환불요청을 받는 등 영업상의 손해가 있다며 정정보도 및 60,000,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.
- 심리결과,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가 인터넷으로 확산되는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, 보도의 부도난 여행사와 신청인 회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리는 후속보도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해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.

조정대상보도

■ YTN – 종합뉴스 프로그램『서울 강남 여행사 부도 … 신혼부부 피해 속출』제하의 기사 (2015년 12월 16일자)

■ 내 용

신혼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가 부도를 내고 신혼부부 수십 쌍의 여행비를 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

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의 모 여행사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.

주로 웨딩 업체와 연계해 고객을 유치한 해당 여행사가 지난 4일 부도처리 되면서, 현재 전국적으로 신혼부부 60여 쌍, 1억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낸 데 이어 검찰에도 업체 대표를 고소할 예정입니다.

조정신청취지

1.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YTN-TV 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통상적인 속도로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글꼴의 크기로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해 주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.

〈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〉

가. 제목 : “○○여행사” 부도 또는 “서울 강남여행사의 부도”는 “○○여행사 부도”가 아니고 강남지역 소재의 “A”여행사로 밝혀져(또는 “오류보도” 관련 정정보도문)

나. 본문 : 본 방송은 2015. 12. 16.과 2016. 1. 12. 아침 종합뉴스방송에서 (서울) 강남여행사 부도 및 회사대표의 도피, 잠적 등의 “강남여행사 부도”라는 자막의 하단표기와 함께 보도하였습니다.

그러나, 사실확인결과 부도 여행사와는 전혀 무관한 “(주)○○여행사” 명칭을 가진 여행업체가 있었고 지난 보도는 강남지역에 소재한 A여행사로서, 더 이상 ○○여행사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이를 바로잡습니다.

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.

2. 피신청인은 2개월의 영업손실금, 신청인의 명예훼손과 신용추락,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신청인에게 60,000,000원을 지급한다.

사건처리결과

조정성립

조정성립사항

1. 보도문
   가. 제목 : '강남 여행사 부도' 단독 기사 관련 안내문
   나. 본문 : 지난 2015년 12월 16일자 「서울 강남 여행사 부도 … 신혼부부 피해 속출」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, 부도가 났다고 보도된 여행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회사로 동대문구에 있는 주식회사 ○○여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.

2. 피신청인은 인터넷 YTN(http://www.ytn.co.kr) 홈페이지에 제1항의 보도문을 2016년 3월 23일 09:00부터 팝업창으로 24시간 동안 게재하되, 제목 및 본문은 인터넷 YTN 홈페이지의 통상적인 기사 제목 및 내용과 같은 크기의 글씨체로 쓰며, 팝업창의 크기는 800×600으로 하고, 각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.

3.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 네이버, 다음, 네이트에 아웃링크한 기사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.

4. 피신청인이 위 제1 ~ 3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,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.

5. 피신청인이 위 제2 ~ 4항을 이행한 경우,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,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·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
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

■ **인터넷 YTN – 『'강남 여행사 부도' 단독 기사 관련 안내문』 제하의 공지 (2015년 1월 30일자 초기화면)**

■ **내　용 – 〈조정성립사항 참조〉**

제6장 기타 – 기각결정 사례

사례24

구청의 시정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.

사 건	2016서울조정791·792 정정·반론청구
신 청 인	어○○
피 신 청 인	이데일리 주식회사 (인터넷 이데일리)
중 재 부	서울 제4중재부
접 수 일	2016. 5. 31.
처 리 결 과	기각결정

사건개요

- 피신청인은 강남구가 세곡동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대상 현안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, 이에 대해 세곡동 주민단체인 ○○○○주민연합이 생색내기용 행사라고 비판한다고 보도했다.
- 이에 대해 세곡동 주민인 신청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○○○○주민연합의 의견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.
- 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에 신청인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, ○○○○주민연합의 의견을 게재한 것만으로 지역주민인 신청인을 보도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, 이 사건 조정신청에 대해 기각결정 하였다.

조정대상보도

■ **인터넷 이데일리 – 『강남구 '현안 산적' 세곡동 주민과 대화 … 효과는 미지수』 제하의 기사 (2016년 5월 24일자 사회면)**

■ **내 용**

서울 강남구가 학교·교통·문화 등 기반시설 부족 등 산적한 세곡동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선다.

강남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세곡동 주민 대상 현안보고회를 4회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.

세곡동은 기존 8개 전원마을로 구성된 인구 약 5000명의 도심 속 농촌지역이었으나 지난해 보금자리 1, 2지구가 준공되면서 인구 5만명에 육박하는 인구밀집 지역으로 탈바꿈됐다. 하지만 학교, 도서관, 교통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.

강남구는 이번 보고회에 주요부서 간부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바로 해소하는 '즉문&즉답'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.

주요 안건은 △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 △세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△강남보금자리 지구내 도서관 건립 등이다.

특히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밤고개로 확장, 대모산터널 건설, 위례~신사선 지선 신설, 동서철도 노선 경유 등 중·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.

하지만 문제는 현안보고회의 실효성이다.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세곡동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이다.

세곡동 복합문화센터나 도서관 건립 등은 구가 갖고 있는 토지를 활용해 가능하지만 더욱 본질적인 교통과 교육 문제는 강남구가 풀 수 있는 게 없다.

강남구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,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요구를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.

게다가 강남구 세곡동장이 세곡동 주민단체인 ○○○○주민연합이 배포한 전단지를 수거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주민들과의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여서 실제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.

옥○○ 강남구 자치행정과장은 "이번 보고회를 통해 추진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해 살기 좋은 세곡동을 만들어 갈 계획"이라고 말했다.

반면 이△△ ○○○○주민연합 대외협력위원장은 "이번 행사는 강남구가 관변 단체 등을 동원해 개최하는 생색내기용 행사에 불과하다"고 지적했다.

조정신청취지

피신청인은 사실관계가 없는 내용을 삭제 후 아래의 보도문을 게재한다.

〈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〉

가. 제목 : ○○주민연합의 실체를 밝히길 바란다.

나. 본문 : ○○○○주민연합이라는 단체명을 기재하였는데 ○○○○주민연합이 무슨 단체인지 알 수 없으며, 세곡 주민을 위한 활동보다는 "국민행복주택"을 반대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임. 세곡동 주민으로서 인정한 적도 없고 어느 직능단체도 인정한 적이 없고 관공서에서도 인정한 적이 없는 단체의 주장을 쓰고 그 단체의 주장과 사건이 확정된 것이 없음에도 게재하여 세곡동 주민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.

사건처리결과

기각결정

기각결정서

주문

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

이유

1. 기초사실 및 신청인의 주장

가.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"강남구청이 세곡동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 세곡동 주민대상 현안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그 효과는 미지수"라고 보도하였다.

나.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강남구청의 행정을 비판하는 ○○○○주민연합이라는 유령단체의 의견을 보도해 세곡동 주민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.

2. 판단

가.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언론중재법'이라 한다) 제14조 제1항,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,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'피해를 입은 자'(피해자)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

있다. 여기서 '피해를 입은 자'라 함은 해당 보도에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,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말한다.

나.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는 신청인을 직접 지명하여 언급한 바가 없고,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해당 보도 중 신청인을 지목한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보도와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'피해를 입은 자(피해자)'로 볼 수 없으므로,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6. 6. 13.

제6장 기타 – 조정불성립결정 사례

사례25

사드(THAAD) 도입으로 우리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, 배치 지역은 전자파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만평은 사실과 다르다.

사 건	2016서울조정1246 정정청구
신 청 인	국방부
피 신 청 인	주식회사 통일뉴스 (통일뉴스)
중 재 부	서울 제7중재부
접 수 일	2016. 9. 1.
처 리 결 과	조정불성립결정

사건개요

- 피신청인은 주한미군 사드(THAAD) 배치에 관한 만평을 통해 사드 도입 및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, 효용성이 낮고 세계 최초로 민가를 앞에 두고 배치해 전자파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.
-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드 배치비용 및 운영·유지비는 모두 미국에서 부담하고, 우리 정부가 구입할 계획이 없으며, 미군은 미 육군 교범에 있는 '비통제 인원 출입제한구역' 도식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였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.
- 심리결과,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는 이미 타 언론사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'풍자와 은유'를 통한 만화 비평으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정정보도할 의향은 없으나, 반론보도는 게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반면, 신청인은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여, 당사자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됐다.

조정대상보도

■ 통일뉴스 – 『사드 배치의 진실』 제하의 기사 (2016년 8월 2일자 그림만평면)

■ 내 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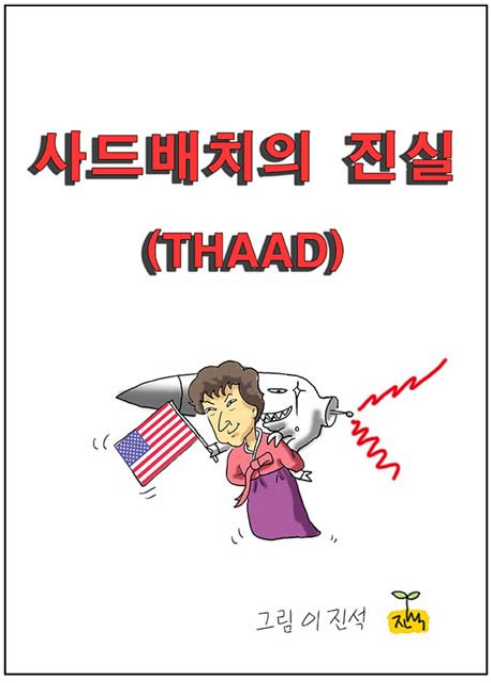
사드배치의 진실
(THAAD)
그림 이진석

임기를 마치면서
제가
대박선물을 준비했어요!
THAAD
미국산
이번엔 무엇을
또 수입하려나..

난 싸드!
내가 가면 주민들이 다들
짐을 싸드라고.. ㅋㅋ
THAAD 싸드
짜~잔!!

이번에도
대박이지?
ㅎㅎ

국민투표?

그럼 난 이제
임기끝!
아몰랑..
그런데 이런 종대사는
영국처럼 국민투표로
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야?
맞는 말이야

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
알게 될수록
찬성할리가 없는데
왜 투표를 하나?
당연히 안하지.

1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무려 2조원의 비용이 드는 무기다.
미국은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
최소 2~4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
그럼 무려 4~8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.

미 육군은 사드레이더 부지를 최소 3만3천 평으로 규정하고
이 중 약 1만 평은 엄격한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.
게다가 포대까지 배치되어 무려 11만평을 필요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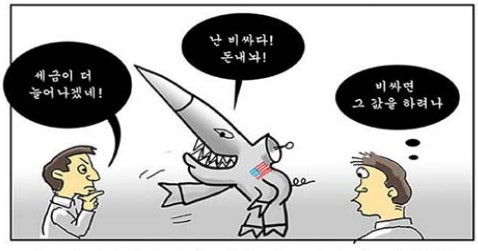

■한국은 설치비용,부지, 전기, 수도 등을 제공해야 하고
연간 1,000억원 이상의 운영 유지비도 부담해야 합니다
■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늘어나게 될 것
(연간 1조원 이상)입니다. (중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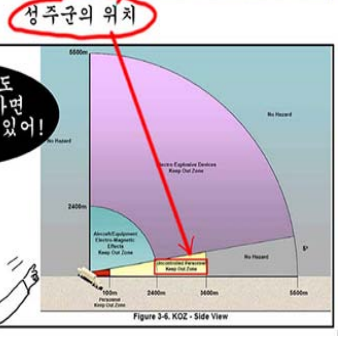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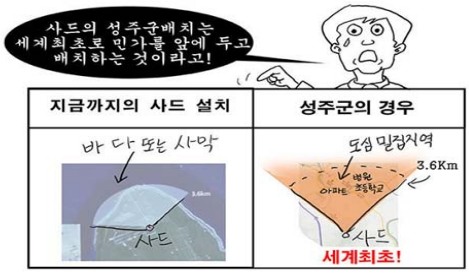

(후략)

조정신청취지

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통일뉴스(http://www.tongilnews.com)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기사 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[ ]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시하되,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,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, 활자체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.

또한, 조정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, 조정대상기사 본문 바로 아래에 이어서 게재하여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되,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, 활자체는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.

〈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〉

가. 제목 : '사드 배치의 진실' 관련 정정보도문

나. 본문 : 본 신문은 지난 2016년 8월 2일 그림 만평에 '사드 배치의 진실'이라는 제목으로 주한미군의 사드(THAAD)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투표가 필요하고, 포대 배치 및 운영유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할 수 있으며,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, 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 대응이 아닌 중·러 감시용이며, 포대 배치 지역의 거주민에게 전자파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.

그러나 우리 국방부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, 위 보도내용은 한미 국방부가 도입키로 한 사드(THAAD)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잘못 보도하였기에 바로잡습니다.

통일뉴스는 주한미군의 사드(THAAD)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주한미군과 국방부 측에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한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,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.

사건처리결과

조정불성립결정

조정불성립 결정서

주문

이 사건 조정은 불성립으로 한다.

이유

이 사건 조정신청은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6. 9. 28.